

#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규정

제 정	2012. 7.
개 정	2014. 9.
개 정	2016. 3.
개 정	2020. 4.
개 정	2022. 10.
개 정	2023. 10.
개 정	2024. 01.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9조, 제30조, 제30조의2, 제31조,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학생에게 적절한 교수·학습 환경을 제공하고, 대학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0.13.)(개정 2023.10.25.)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라 함은 교수·학습활동 및 대학생활에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하는 신체 및 감각기관의 기능 이상 또는 기능 저하를 의미한다.(개정 2022.10.13.)
2. “장애학생”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4호에 의하여 본교에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과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본교 재학생을 말한다.(신설 2022.10.13.)
3. “교육·복지”라 함은 장애학생의 교수·학습 환경의 개선 및 대학생활에 관련된 활동을 의미한다.(개정 2022.10.13.)
4. “장애학생지원센터”는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교육활동 및 편의지원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한다.(개정 2022.10.13.)

**제3조(장애학생에 대한 배려)** 대학생활 및 후생복지 지원과 관련하여 장애학생이 차별받지 않도록 배려한다.

**제4조(차별의 금지)** ① 장애학생 및 특수교육대상자가 입학하고자 할 때는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 교육 기회에 있어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4.09.01.)(개정 2022.10.13.)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장애학생의 개별특성을 고려한 교육 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장애학생 및 특수교육대상자와 그 보호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4.09.01.)(개정 2022.10.13.)

1. 특수교육서비스 제공에서의 차별
2. 수업 및 교내외 활동 참여 배제
3. 장애학생 개별상담 및 지도 등 보호자 참여 배제
4. 대학의 입학전형절차에서 장애로 인하여 필요한 수험 편의의 내용을 조사·확인하기 위한 경우 외에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를 요구하는 등 입학전형 과정에서의 차별(개정 2022.10.13.)
5. 기타 장애를 이유로 한 그 밖의 거부, 배제 등의 차별

제5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에게 적용한다.(개정 2014.09.01.)

## 제2장 조 직

제6조(장애학생지원부서) ① 장애학생지원부서는 장애학생지원센터(이하 '센터')를 둔다.(개정 2020.04.13.)

② 장애학생지원부서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장애학생지원서비스 기준 작성에 관한 사항
2. 장애학생 교수·학습지원 및 조정프로그램을 위한 사전 조사,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장애학생 학사, 진로, 생활 등의 상담에 관한 사항
4. 장애학생 교육지원인력 배치 등의 인적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22.10.13.)
5. 장애학생 학습보조기기 지원에 관한 사항
6. 장애학생 편의시설·설비의 제공 및 개선에 관한 사항
7.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문화 및 교육에 관한 사항
8. 장애학생 교육복지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9. 기타 장애학생 지원개선 업무 등에 관한 사항

③ 센터는 상담의 질적 제고를 위해 비대면 상담 운영 및 평가를 할 수 있고, 비대면 상담은 상담교수 및 전문상담원이 담당한다.(개정 2019.05.08.)

④ 센터는 장애학생 지원을 위하여 상담교수를 둘 수 있다.(개정 2020.04.13.)

제7조(구성) ① 센터에 센터장을 두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교직원으로서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20.04.13.)(개정 2023.10.25.)

1. 교육학, 사회복지학, 법학 등 장애인 인권 관련 분야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2. 교육, 보건·의료, 복지 등 분야의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자격을 소지한 사람
3. 장애학생 지원 및 복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센터장은 교원으로 보하며 센터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20.04.13.)

③ 센터에는 행정 및 상담업무 지원을 위하여 부센터장, 연구원 및 전담직원과 조교 등을 둘 수 있다.(개정 2020.04.13.)

## 제3장 교수·학습 지원

제8조(교수·학습 지원) 장애학생의 교수·학습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학생을 위한 교수·학습 지원 권고 안내문 발송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22.10.13.)
2. 장애학생을 위한 학사, 진로, 생활 등의 상담에 관한 사항
3. 장애학생을 위한 교육지원인력 배치 등의 인적 지원에 관한 사항(일반 교육지원인력, 수어통역사, 속기사, 점역사 등 전문 교육지원인력)(개정 2022.10.13.)(개정 2023.10.25.)
4. 장애학생을 위한 교수·학습 기자재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에 관한 사항
5. 장애학생을 위한 강의실 접근성 향상에 관한 사항
6. 교직원 등의 장애인식교육에 관한 사항
7. 장애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에 관한 사항(개정 2022.10.13.)
8. 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에 장애학생의 정보접근 지원을 위한 사항(신설 2022.10.13.)
9. 기타 장애학생의 교수·학습에 필요한 사항(개정 2022.10.13.)

**제8조2(개인별 수요 조사 및 교육지원계획 수립 등)**(신설 2023.10.25.) ①센터장은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애학생의 개인별 수요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특별지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2. 장애학생에게 필요한 수단 및 기간

② 센터장은 제1항의 보고사항을 반영하여 매 학기마다 장애학생에 대한 개인별 교육지원계획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총장에게 보고된 개인별 교육지원계획의 내용을 해당 장애학생에게 대학이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알려야 하며, 장애학생이 요청하면 해당 계획을 장애학생 소속 학부(과) 또는 대학원의 장에게도 통지해야 한다.

④ 그 밖의 개인별 수요 조사 및 교육지원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정한다.

**제9조(편의시설 지원)** 장애인 편의시설 및 교내 이동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2.10.13.)

1. 장애인 편의시설·설비 개선 및 지원
2. 장애학생의 교내 이동을 위한 차량 운행(개정 2022.10.13.)
3.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 파악 및 공개(개정 2022.10.13.)
4. barrier-free(무장애 환경) 공간 및 시설 확충(신설 2016.03.01.)

## 제4장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

**제10조(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 ① 장애학생 교육·복지 지원의 기본방침과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0.04.13.)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부총장, 학생복지처장, 장애학생지원센터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교내·외 구성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장애학생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개정 2020.04.13.)(개정 2022.10.13.)(개정 2023.10.25.)(개정 2024.01.18.)

③ 위원장은 부총장으로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22.10.13.)(개정 2023.10.25.)(개정 2024.01.18.)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2.10.13.)

1.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 및 교육·복지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23.10.25.)
3. 심사청구 사건에 대한 심사·결정 사항(개정 2023.10.25.)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고, 간사는 센터의 직원으로 한다.(개정 2022.10.13.)

⑦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각 호별 해당 위원 수가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신설 2023.10.25.)

1. 본교의 장애학생 지원 및 복지 관련 교직원
2. 본교 재학 중인 장애학생
3. 그 밖에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대학의 장이 인정하는 전문가

⑧ 위원은 심사대상 청구사건의 책임자 또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고,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신설 2023.10.25.)

제10조의2 (삭제 2022.04.13.)

제10조의3(심사청구 등)(신설 2023.10.25.) ① 장애학생 및 그 보호자가 총장에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각종 지원 조치를 제공할 것을 서면[별지 제1호 서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총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2주 이내에 지원 여부 및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서면[별지 제2호 서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장애학생 및 보호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대학의 결정(부작위 및 거부를 포함한다)과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2주 이내에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심사결과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심사에서 청구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⑥ 총장, 교직원, 그 밖의 관계자는 제4항에 따른 결정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자문위원) ① 센터의 사업기획 및 수행 등에 관한 센터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본교 또는 타 기관의 장애인전문가(장애인 관련 교수, 특수교육 관련 교수, 장애인고용전문가, 장애인단체장 등) 중에서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20.04.13.)

② 자문위원들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관련부서 등의 협조) 센터는 심리상담, 진로지도 등과 관련하여 관련부서 간 협력을 통해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상담업무를 수행한다.(신설 2014.09.01.)(개정 2020.04.13.)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01.18. 우송대학교 직제규정 개정)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